

사업 연도	~	<b>최저한세조정계산서</b>	법인명	
			사업자등록번호	

**1. 최저한세 조정 계산 명세**

① 구	분	코드	② 감면 후 세액	③ 최저한세	④ 조정감	⑤ 조정 후 세액
100	결산서상 당기순이익	01				
소 조 정 금 액	102	익금산입	02			
	103	손금산입	03			
104	조정 후 소득금액 (101+102-103)	04				
최 저 한 세 적 용 대 상 특 별 비 용	105	준비금	05			
	106	특별상각 및 특별자산 감가상각비	06			
107	특별비용 손금산입 전 소득금액 (104 + 105 + 106)	07				
108	기부금 한도 초과액	08				
109	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	09				
110	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(107 + 108 - 109)	10				
111	이월결손금	11				
112	비과세소득	12				
113	최저한세 적용대상 비과세소득	13				
114	최저한세 적용대상 익금불산입·손금산입	14				
115	차감소득금액 (110 - 111 - 112 + 113 + 114)	15				
116	소득공제	16				
117	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공제	17				
118	과세표준금액 (115 - 116 + 117)	18				
119	선박표준이익	24				
120	과세표준금액 (118 + 119)	25				
121	세율	19				
122	산출세액	20				
123	감면세액	21				
124	세액공제	22				
125	차감세액 (122 - 123 - 124)	23				

**2. 최저한세 세율 적용을 위한 구분 항목**

126	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연월	127	유예기간 종료 후 연차		
-----	--------------------	-----	-----------------	--	--

작성 방법

※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의10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의 경우에는 ㉑란부터 ㉒란까지, ㉓란 및 ㉔란에 비해운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을 적으며, ㉕ 선박표준이익란에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[별지 제3호서식 부표]의 ⑦ 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.

또한,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(별지 제1호서식)의 ④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이 '기능통화 표시 재무제표 기준'으로 '2'로 표기할 경우 ㉑란부터 ㉒란까지의 금액은 기능통화로 표기하지 않고, 기능통화 금액에 같은 별지 제1호서식의 ㉓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습니다. 이때 작성방법 1~12까지의 각종 조정명세서, 명세서 등 관련 서식에도 같은 별지 제1호서식의 ㉓ 과세표준 환산 시 적용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습니다.

※ 예 : 기능통화(USD), 적용환율(1,100원), 당기순이익(USD 2,000)일 경우 ㉑ 결산서상 당기순이익란은 '2,200,000' 으로 적습니다.

- ②란 중 ㉑ 차감세액란의 금액이 ③란 중 ㉒ 산출세액란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④란 및 ⑤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.
- ㉑ 조정 후 소득금액란: ②,③,⑤란에 모두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.
- ③란 중 ㉑ 준비금란의 금액은 "특별비용조정명세서(별지 제5호서식)"의 ㉑ 준비금 계란 중 ④ 차감액을 적고, ㉒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 감가상각비란의 금액은 "특별비용조정명세서(별지 제5호서식)"의 ㉑ 특별 감가상각비 계란 중 ④ 차감액과 ㉒ 특례 자산 감가상각비 계란 중 ④ 차감액을 합하여 적습니다.
- ④란 중 ㉑ 준비금란의 금액은 "특별비용조정명세서(별지 제5호서식)"의 ㉑ 준비금 계란 중 ⑤ 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란을 옮겨 적고, ㉒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 감가상각비란의 금액은 "특별비용조정명세서(별지 제5호서식)"의 ㉑ 특별 감가상각비 계란 중 ⑤ 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란과 ㉒ 특례자산 감가상각비 계란 중 ⑤ 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란을 합하여 옮겨 적습니다.
- ②란과 ③란 중 ㉑ 기부금한도초과액란: "기부금조정명세서(별지 제21호서식)"의 ㉑ 한도초과액합계금액을 적습니다.
- ②란과 ③란 중 ㉑ 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란: "기부금조정명세서(별지 제21호서식)"의 ㉑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란의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.
- ③란 중 ㉑ 최저한세 적용대상 비과세소득란: "비과세소득명세서(별지 제6호서식)"의 ⑧ 금액란 중 ㉑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.
- ④란 중 ㉑ 최저한세 적용대상 비과세소득란: "비과세소득명세서(별지 제6호서식)"의 ⑨ 최저한세적용 비과세배제금액란 중 ㉑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.
- ③란 중 ㉑ 최저한세 적용대상 익금불산입란: "익금불산입 조정명세서(별지 제6호의2서식)"의 ⑤ 익금불산입 총액란 중 ㉑, ㉒, ㉓부터 ㉔까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.
- ④란 중 ㉑ 최저한세 적용대상 익금불산입란: "익금불산입 조정명세서(별지 제6호의2서식)"의 ⑥ 최저한세적용 익금불산입 배제액란 중 ㉑, ㉒, ㉓부터 ㉔까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.
- ③란 중 ㉑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공제란: "소득공제조정명세서(별지 제7호서식)"의 ⑥ 소득공제 대상금액란 중 ㉑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.
- ④란 중 ㉑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공제란: "소득공제조정명세서(별지 제7호서식)"의 ⑦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중 ㉑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.
- ③란 중 ㉑ 산출세액란: ㉑란의 금액에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②란 중 ㉑ 산출세액란의 산출세액을 ②란 중 ㉑ 선박표준이익이 ②란 중 ㉑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.

※ 최저한세 세율

구분	중소기업 (유예기간 4년 포함)	유예기간 경과 후		일반기업		
		1~3년차	4~5년차	과표 1백억원 이하	과표 1백억원~1천억원 이하	과표 1천억원 초과
현행	7%	8%	9%	10%	12%	17%
중진	7%	8%	9%	10%	12%	16%

\* 2014. 1. 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현행 세율 적용

- ②란 중 ㉑ 감면세액란: "공제감면세액계산서(2)(별지 제8호서식 부표 2)"의 ③ 감면대상세액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.
  - ④란 중 ㉑ 감면세액란: "공제감면세액계산서(2)(별지 제8호서식 부표 2)"의 ④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.
  - ②란 중 ㉑ 세액공제란: "세액공제조정명세서(3)(별지 제8호서식 부표 3)"의 ㉑란(당기 공제대상세액의 계)의 합계금액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합계금액을 옮겨 적습니다.
- ※ 「법인세법」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, 「법인세법」 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세액공제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.
- ④란 중 ㉑ 세액공제란: "세액공제조정명세서(별지 제8호서식 부표 3)"의 ㉑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미공제액란의 합계금액란에 옮겨 적습니다.
  - ⑤란 중 ㉑, ㉒, ㉓, ㉔, ㉕란은 각각 ④란 중 ㉑, ㉒, ㉓, ㉔, ㉕란의 금액과 일치합니다.
  - ⑤란 중 ㉑, ㉒란은 각각 ②란 중 ㉑, ㉒란의 금액에서 ④란 중 ㉑, ㉒란의 금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.
  - ⑤란 중 ㉑ 차감세액은 ③란 중 ㉒ 산출세액보다 작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
  - ㉑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연월란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유예기간(4년)이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연월을 '사업연도 연월'과 같이 적습니다.

※ 예: 중소기업을 졸업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2008. 12. 31. 경우, 유예기간 종료연월은 '2011. 12'로 적습니다.

- ㉑ 유예기간 종료 후 연차란은 ㉑의 유예기간 종료 후 연차가 1~5년차의 경우 그 연차에 따라 1, 2, 3, 4, 5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- 음영으로 표시된 난은 적지 않습니다.